

전화서비스 기본약관

2019. 7. 5.

세종텔레콤(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세종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등)

- ①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에 따라 제정한 것입니다.
- ②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기통신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령에서 정하는 국내와 국외간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 2. 이용계약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와 체결한 계약
- 3. 서비스 이용자 : 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 4. 서비스 이용권 : 이용자가 회사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이하 “이용권”이라 합니다.)
- 5. 단말기기 : 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구내통신설비를 포함합니다.)
- 6. 별정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령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는자
- 7. 해제 : 회사와 계약신청자가 승낙 이후 서비스 개통 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 8. 해지 : 회사의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 9.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10.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11. 번호이동 :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것

제4조 (적용범위)

- ①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별 약관과 함께 적용합니다.
-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서비스별 약관을 우선 적용하고, 이 약관 및 서비스별 약관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5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사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경우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 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1688-1000)
- ⑦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 센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 ⑨ 회사는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지되는 통화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⑪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명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관리합니다.
- ⑫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한 설비를 승인 없이 이동, 철거, 분해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연결할 수 없으며, 설비를 망실, 훼손한 경우 보충, 수리,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서비스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⑤ 이용자는 전기통신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이용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⑥ 이용자는 비밀번호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하는 책임은 이용자가 집니다. 다만, 비밀번호의 유출, 통화카드의 분실 등에 있어 이를 회사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통화요금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국내 다른 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아 요금 청구 및 수납 등의 업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회사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정보에 의합니다.
- ⑧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 변경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⑨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 ⑩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⑪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 합니다.
- ⑫ 사설전화교환기를 운영하는 가입자는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이 해킹 또는 교환시스템 운용자에 의해서 전화번호 임시변작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1. 8자리 이상의 관리자 접속 패스워드 설정(6개월에 1회 패스워드 변경)
 2.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을 외부인터넷에 직접 노출 금지
 3.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의 주기적인 보안패치
 4. 기타 보안에 필요한 조치
- ⑬ 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사설교환기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제 2 장 계 약

제1절 이용계약

제7조 (이용계약)

- ① 이용신청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사의 통신망에 연동하여 별정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신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도의 설비 이용 및 통신망연동에 관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1. 이용교환기 및 회선설비용량이 명시된 통신망구성도
 2. 별정통신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관련서류
- ③ 별정통신사업자가 가입자 모집 등 회사의 영업행위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별정통신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별정통신이용약관
 3. 별정통신사업계획서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관련서류
- ④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사가 요금납부책임자에게 청구할 요금채권을 인수하여 재과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⑤ 제1항 또는 제4항의 이용신청 및 계약체결 요청은 승낙 이전에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승낙)

- ① 회사는 이용신청이 서비스별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합니다. 단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계약체결 완료를 승낙으로 봅니다.
- ②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별도의 비용이나 물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신청자가 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회사는 다음 사항을 이용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1. 개통예정일
 2. 승낙회선수
 3. 이용자의 권리의무
 4. 고장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요금에 관한 사항

6. 그밖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④ 회사는 제7조(이용계약) 제2항에 의한 계약체결 요청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승낙합니다.

1. 통신망 연동에 필요한 회사의 교환기를 개방하는 원칙
2. 통신망 연동을 위해 회사의 설비를 개조하는 경우에 비용은 별정통신사업자가 부담

⑤ 회사는 제7조(이용계약)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계약체결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승낙합니다.

1. 가입자모집 대상범위 및 재과금 대상범위는 회사와 별도 협의하여 정함
2. 회사로부터 취득한 기술, 계약자, 영업에 관한 정보 및 통신내역 등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외부 유출하는 행위금지
3. 기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계약조건

제9조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이용신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보하고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신청자가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요금 등의 체납상태인 경우
3. 회사 카드의 위조, 변조 등 불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 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 공공기록정보 중 체납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6.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7.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8. 단말기기 설치장소가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9.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10. 가입 서비스의 회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유선전화 서비스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함
11. 제20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단,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

② 회사는 제7조(이용계약)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자의 계약체결요청이 제8조(승낙) 제4항 및 제5항의 승낙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고 그 사유를 별정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승낙유보사항이 해소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제10조 (계약사항의 열람·증명)

이용자,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2절 설치 및 개통

제11조 (단말기기 등의 설치)

- ① 제8조(승낙)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받은 사람은 제12조(개통)의 규정에 의한 개통 예정일 이전에 자신의 부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회사가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에 적합한 단말기기를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공 또는 대여하는 단말기기는 회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 ③ 단말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적법한 건축물로서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④ 통신망 연동에 관한 계약체결을 완료한 별정통신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회사 교환기와 연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분계점은 회사 교환기에 접속된 최초의 회선 분배반으로 합니다

제12조 (개통)

- ① 회사는 제8조(승낙)의 규정에 의해 서비스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승낙한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 합니다. 다만, 회선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신청 접수 후 개통 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청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 희망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 희망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개통예정일의 7일전까지 회사에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에는 부여된 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⑤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통일은 이용계약상의 이용희망일로 합니다. 다만, 이용희망일 내에 개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용신청일 이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개통 가능한 시기를 통보합니다.

제3절 계약 및 이용권의 변경

제13조 (계약 내용의 변경 등)

- ① 이용자가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에 대하여는 제8조(승낙), 제9조(승낙의 제한), 제11조 (단말기기 등의 설치), 제12조(개통)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4조 (이용권의 양도)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이용권은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5조(이용자 지위의 승계)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용자 지위의 승계)

- ① 이용권을 양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1. 전화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
 2. 가족 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
 3.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및 동일 법

인의 단순 상호변경

4. 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 ② 제1항의 양도·승계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4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의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본 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본 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본 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회사의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4. 본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5.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16조 (개명 등)

- ① 회사와 가입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개명 등에 의하여 명의를 변경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통지를 하지 않아 회사가 데이터 등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4절 서비스 이용정지 등

제17조 (이용정지)

-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제1호의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로 합니다.)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에 관한 요금, 가산금 또는 불법면탈 요금을 최초 납기일의 익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회사가 설치 또는 대여한 설비를 승인 없이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연결한 경우
 3. 단말기기를 정당한 설치장소 외에 설치한 경우
 4. 단말기기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직원에 의한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 위약 사실을 숨긴 경우
 6. 부당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전화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 발신번호 변작 등의 사유로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8.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9. 전기통신사업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화번호가 전송되는 경우
10. 이용자가 임의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전송하는 경우
11.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12.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워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13.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4. 계약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15.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16. 제37조(발신번호의 변작 금지)에 해당될 경우
17. 청소년보호법 제19조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3개월 동안 이용정지 가능)
1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의3에 따라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를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가능
19.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 회선 수를 초과하여 상기 7~18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될 경우, 회사는 이용자 명의의 전체 서비스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정지 7일전까지 통지 하여야 하며, 제1항 제17호 및 18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이용자는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제1항의 서비스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제1항 제17호 및 18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이용제한 및 차단)

-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회사는 이용제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 하거나 별도로 공시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약속을 해하거나 사전 윤리심의를 받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불완료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해당 번호는 이용정지 절차 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일시이용중단)

- ① 이용자는 부가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중단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일시이용중단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까지 이용중인 번호의 유지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휴지 처리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이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제20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①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체결한 해당 계약기준에 의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 부당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 2. 이용 정지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이용정지 사유를 없애지 아니한 경우
 - 3. 직접접속회선 등 회사가 제공 또는 대여한 설비의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 위법 사항을 은폐한 경우
 - 4. 요금감면의 부적격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경우
 - 5. 제37조(발신번호의 변작 금지)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 6. 이용휴지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재이용 신청이 없는 경우. 단, 기간은 서비스별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7.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8.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하는 경우
 - 9.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 10.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11.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 회선 수를 초과하여 상기 8~11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될 경우, 회사는 이용자 명의의 전체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2. 제17조(이용정지)제1항제13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 ③ 회사는 별정통신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제8조(승낙) 제4항 및 제5항의 승낙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요 금

제1절 통칙

제21조 (과금거리의 산정)

- ① 요금산정을 위한 거리(이하 “과금거리”라 합니다)는 과금기점 상호간의 직선거리로 합니다.
- ② 과금거리의 단위는 킬로미터로 하며 1킬로미터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과금기점 및 관할구역, 과금거리는 케이티가 정하여 공시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제22조 (이용시간의 산정)

-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발신측과 수신측이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부터 양측의 어느 일방이 통신이용의 종료신호를 인지한 때까지로 합니다.
- ② 서비스의 이용시간 중에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③ 수신측의 부재중 응답장치에 접속되어 응답이 있었던 때에는 통화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요금의 산정)

- ① 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 1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 ② 1일 이용시간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 합니다.
- ③ 월정액으로 하는 요금에 있어서 개시일은 산입하고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이때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사용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월정액의 30분의 1일 곱하여 산정합니다.
- ④ 회사는 별정통신사업자와 가입자 모집 등 회사의 영업행위를 대행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요금의 적정한 범위 내 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⑤ 이 약관에 의하여 청구하는 요금(가산금과 불법면탈요금을 포함합니다.)의 계산결과가 1원 미만 인 경우에는 이를 절사합니다.

제24조 (통화중단의 취급)

- ① 이용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통화중단이 있었던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중단의 통지를 받은 통화의 통화시간을 제22조(이용시간의 산정)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합니다

제2절 요금의 청구

제25조 (요금의 납부청구)

- ① 회사는 별정통신사업자를 제외하고 요금납부 청구서를 납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부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요금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 측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요금납부청구서가 요금납부 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 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의 부과나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6조 (요금의 통합청구)

회사는 요금납부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2회선 이상의 전화번호에서 발생한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 합니다.

제27조 (요금의 즉시청구)

회사는 요금납부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정기 청구일 이전이라도 일정기간의 요금을 계산하여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즉시라 함은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요금납부청구서를 발부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제28조 (이의신청)

- ① 요금납부책임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조사결과 요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기 납부 요금에 대하여는 제33조(요금의 반환 및 체납요금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납부되지 않은 요금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납기일을 재지정하여 조정된 요금의 납부청구서를 발송합니다.

제29조 (소멸시효)

요금의 납입 청구권은 최초의 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부당하게 납부하지 않은 요금,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정액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3절 요금의 납부

제30조 (요금의 납부책임)

- ① 요금의 납부책임은 서비스를 이용할 당시의 이용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다음 각호의 요금납부책임자는 1차 납부의무를 지고, 이용자는 2차 납부의무를 집니다.
 - 1. 제3자 과금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요금납부책임자
 - 2. 자동납부하는 경우의 자동납부약정자
 - 3. 이용자를 대위하여 회사에 요금납부각서를 제출한 경우의 요금납부각서인
 - 4. 기타 부가서비스 이용지침에서 정하는 요금납부책임자
- ③ 제7조(이용계약) 제4항에 의하여 회사와 요금채권인수계약을 체결한 별정통신사업자는 그 요금에 대하여 납부책임을 집니다.
- ④ 본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계약자는 그 요금에 대한 납부책임이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⑤ 이용자는 회사가 요금의 청구 및 수납업무에 필요로 하는 정보 (이하 "과금수납정보"라 합니다)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과금수납정보를 제공받아 요금의 청구 및 수납업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요금의 납기일)

회사는 요금의 납기일 및 납부장소를 정하여 요금납부청구서에 기재합니다.

제32조 (사전납부)

- ① 요금납부책임자는 회사에 신청하여 요금이 청구되기 전에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납부할 금액은 최근 3월간의 요금을 평균한 1월분 이상으로 하며, 회사는 이 금액을 요금 확정 월에 정산처리 합니다.

제4절 요금의 반환

제33조 (요금의 반환 및 체납요금의 징수)

- ① 회사는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거나, 사전납부 금액의 정산 또는 요금의 이의신청 처리결과 반환할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을 즉시 반환합니다. 다만, 요금을 반환 받을 사람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요금에서 그 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요금을 반환 받는 사람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 ③ 회사는 요금납입자가 요금을 체납하여 최초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독촉 등의 납입최고를 못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천재지변 또는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4조 (가산금의 부과)

회사는 요금납부책임자가 납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납기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미납요금의 100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

제 4 장 보 칙

제35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 별 약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서비스 별 약관에서 별도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이용자가 납부한 최근 3월분 요금의 일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 ③ 제2항의 손해배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발송 및 제17조(이용정지) 제2항제7호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거나 재가입 방지를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

-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2에 따라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②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 시 회사가 정한 신청요건이나 신청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신청시,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 ④ 발신번호를 변작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본조 제4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기 전에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⑥ 본조 제4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자료
 -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 ⑦ 회사는 본조 제6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⑧ 회사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⑨ 이용자 요청에 의한 발신번호 변경은 1회선당 1개월(30일)내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설교환기 회선은 제외합니다.

제38조 (이용내역의 열람)

이용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서비스 이용당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이용내역의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제정 시행합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7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